

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		<b>보 도 자 료</b>	
		총 2매	
<b>담당 부서</b>	경영기획부	<b>담당자</b>	·부장 심윤수, 과장 오찬근 ·☎ (02) 792-2916
<b>배포일시</b>		2023년 09월 14일(목)	

## 초등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추진

- 국토교통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'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' 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기준 완화 예정
-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일부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 취소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'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'을 개정해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입법예고 및 시행할 예정이다.
- 이와 관련, 연합회에서는 체험학습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법안이 조속히 마련토록 김교흥 의원실을 통해 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안 통과 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 대안으로 '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'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기준(구조변경)을 완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 요청한 바 있다.

-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에서는 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’의 신고 기준을 ‘어린이 보호표지 부착’을 제외한 황색(노란색) 도색, 정지표시 장치, 후방보행자 안전장치, 경광등, 하차확인장치 등 나머지 기준을 제외하여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며 법제처는 사전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추석 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.
  
- 전세버스연합회(회장 오성문)에서는 금번 국토교통부의 규칙 개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법안 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불식과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체험학습 운행의 사각지대가 완화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
  
- 또한 규칙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 법안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여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체험학습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